# 방송광고거래약관

(광고회사용)

제정 2012.12. 1 개정 2014. 4.16 시행 2014. 6. 1 개정 2016. 8.25 시행 2016. 9. 1 개정 2016.12.23 시행 2017. 1. 1 개정 2020.11.30 시행 2020.11.30 개정 2025. 2.21 시행 2025. 3. 1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방송광고 거래 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송광고판매법"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합니다)와 방송광고대행자(이하 "광고회사"라 합니다)간의 방송광고 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합니다.
- 제2조(약관의 신고 및 변경 등) ①이 약관은 방송광고판매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신고를 한 것이고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합니다.
  - ②공사는 이 약관을 공사 홈페이지(www.kobaco.co.kr)에 게시하고, 광고회사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5.2.21>
  - ③공사가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광고회사에 불리한 약관 변경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④제3항에 따라 변경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한 후 7일 이내에 광고회사의 명시적인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광고회사가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⑤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광고회사는 방송광고 거래 기본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회사가 변경 전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공사는 방송광고 거래 기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3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방송광고판매법 제5조에 따라 공사가 방송사로부터 위탁받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업무 및 방송법 제73조에 따라 외주제작사로부터 위탁받은 간접광고 판매대행업무에 적용합니다. <개정 2016.8.25.>
-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2016.8.25.> <개정 2020.11.30.> <개정 2025.2.21>
  - 1. "방송광고"라 함은 방송법 제2조 제21호에 따른 방송광고를 말합니다.
  - 2. "광고회사"라 함은 광고주로부터 위탁받아 공사에게 방송광고를 의뢰하는 자를 말합니다.
  - 3. "광고주"란 유·무형의 재화나 용역 또는 행위, 사실 등에 대하여 판매 또는 홍보 등을 목적으로 방

송광고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4. "방송편성"이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5. "방송프로그램"이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을 말합니다.
- 6. "방송프로그램광고"란 방송프로그램의 전후(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후부터 본방송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및 본방송프로그램 종료 후부터 방송프로그램 종료타이틀 고지 전까지를 말합니다)에 편성되는 광고를 말합니다.
- 7. "중간광고"란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를 말합니다.
- 8. "토막광고"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를 말합니다.
- 9. "자막광고"란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를 말합니다.
- 10. "시보광고"란 현재시간 고지 시 함께 방송되는 광고를 말합니다.
- 11. "가상광고"란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를 말합니다.
- 12. "간접광고"란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방송광고를 말합니다.
- 13. "광고요금"이란 공사가 방송광고 청약자에게 방송광고를 판매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 14. "시급"이란 시청률 또는 청취율을 고려하여 방송사와 공사가 협의하여 정한 방송광고 시간대별 등급을 말합니다.
- 15. "전파료"란 전파발사에 필요한 제경비 차원의 시설비, 전기료, 인건비 및 기타관리비 등의 개념을 요금에 반영한 금액을 말합니다.
- 16. "대체방송물(필러)"이란 급박한 사정에 의해 기본편성표에 예정된 프로그램을 대체하여 방송된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 17. <삭제 2020.11.30.>
- 18. "광고주 방송광고대행계약업무"란 방송광고 대행을 의뢰하는 광고주와 의뢰를 받는 광고회사간의 신규 계약, 기존 계약의 연장 및 기존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업무를 말합니다.
- 19. "방송광고 전산시스템"이란 공사가 광고주와 광고회사에 방송광고 관련 업무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시스템으로써 방송광고청약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코바넷(KOBANET)(이하 "코바넷"이라 합니다)과 방송광고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방송사에 전송할 수 있는 코덱스 (KODEX)(이하 "코덱스"라 합니다) 시스템을 말합니다.
- 20. "운행불일치"란 광고회사가 공사를 통해 방송사에 의뢰한 대로 방송광고가 방송되지 않거나 공사를 통해 방송사에 의뢰하지 않는 방송광고가 방송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21. "신탁마감"이란 광고회사가 청약한 광고료를 월단위로 정산하는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 22. "광고료"란 공사가 광고회사에 판매한 방송광고요금 총액을 말합니다.
- 23. "거래금액"이란 광고료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24. "광고료 세금계산서"란 공사가 부가가치세법 등의 관계 법규에 따라 월간 광고료를 월말 기준으로 광고주에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 25. "대행수수료"란 본 약관에 대한 광고회사의 이행 등 방송광고업무대행에 대한 대가로 공사가 광고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방송광고판매법상 광고대행수수료를 말합니다.

- 26. "대행수수료 세금계산서"란 광고회사가 부가가치세법 등의 관계 법규에 따라 월간 대행수수료를 당해 월말 기준으로 공사에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 ②제1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과 방송광고판매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제5조(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적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과 방송 광고판매법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 고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제2장 방송광고 거래 기본계약 체결

- **제6조(요건)** 광고회사가 광고주의 방송광고 업무를 대행하여 공사로부터 방송광고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개정 2016.12.23.><개정 2020.11.30.> <개정 2025.2.21>
  - 1. 상법상의 회사
  - 2. 법인등기부등본 목적과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광고대행 기재
  - 3. <삭제 2020.11.30.>
- 제7조(제출서류) ①방송광고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광고회사는 공사가 요구하는 <덧붙임 1>의 "방송광고거래 신청서"를 작성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 2020.11.30.>
  - 1. 목적에 "광고대행"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1부(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
  - 2. 종목에 "광고대행"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 3. 법인인감증명 1부(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
  - 4. <삭제 2020.11.30.>
  - ②광고회사는 제8조의 계약체결 이후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8조(방송광고 거래 기본계약 체결) 광고회사는 이 약관에 따른 방송광고업무대행을 개시하기 전에 공사와 "방송광고 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제3장 광고회사의 광고주 방송광고대행계약 제출

- 제9조(방송광고대행계약 확인서 제출) ①제8조에 따라 공사와 방송광고 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광고회사는 광고주(품목대행을 포함)와 대행계약기간 및 대행품목이 명시된 방송광고대행계약확인서 또는 간접광고대행계약확인서(양자를 통칭하여, 이하 "대행계약확인서"(양식1, 2)라 합니다.)를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대행계약확인서는 방송예정일로부터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10조(방송광고대행계약 해지확인서 제출) ①광고주의 방송광고업무대행계약 해지는 광고회사가 공사에게 위탁한 방송광고가 중지된 후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②제9조 제1항과 관련하여 타 광고회사와의 방송광고대행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광고주일 경우에는 방송광고대행계약해지확인서, 간접광고대행계약해지확인서(양자를 통칭하여, 이하 "대행해지확인서"(양식3, 4)라 합니다.)를 대행계약확인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대행계약해지확인서는 계약의 해지 예정일로부터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11조(방송광고대행계약 연장확인서 제출) ①대행계약기간이 만료된 광고주에 대한 계약 연장은 방송 광고대행계약 연장확인서 또는 간접광고대행계약 연장확인서(양자를 통칭하여, 이하 "대행연장확인서"(양식5, 6)라 합니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대행계약연장확인서는 연장개시일로부터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4장 광고회사와의 방송광고 청약을 위한 업무

- 제12조(방송광고요금) ①광고요금과 시급은 방송광고요금표에 따릅니다. 방송광고요금표는 공사 홈페이지(www.kobaco.co.kr)에 공지합니다. 이 경우, 광고1번지 등 판매정보지와 코바넷에 게재함으로써 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5.2.21>
  - ②대체방송물(필러)로 재방송된 경우는 전파료만 적용하며, 광고요금은 광고회사와 협의 후 청구합니다.
- 제13조(시급의 적용과 변경) ①방송광고가 복수의 시급에 걸쳐 방송되는 경우, 토막광고와 자막광고는 높은 쪽의 시급을 적용하고, 방송프로그램의 전파료는 해당시급의 비율에 의합니다.
  - ②방송광고가 다른 시급으로 변경되어 방송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급을 적용합니다. 다만, 가상 광고는 시급이 변경되어 방송된 경우에도 당초 청약한 광고요금을 적용합니다.
    - 1. 방송프로그램의 전후 방송프로그램광고가 각각 청약당시 방송 프로그램 편성표보다 낮은 시급으로 변경되어 방송된 경우, 광고요금은 변경된 시간대의 기본 방송프로그램 광고요금에 준하여 재산정합니다. 다만, 높은 시급으로 변경 방송된 경우에는 당초 청약한 광고요금을 적용합니다.
    - 2. 토막광고 및 자막광고가 낮은 시급으로 10분 이상 변경되어 방송된 경우에는 실제 방송된 시급의 광고요금을 적용합니다. 다만, 시급이 2시급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종 변경된 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 3. 제1호의 시급변경을 동반한 시보광고의 시급변경에 따른 광고요금은 변경된 시간대의 기본방송 프로그램에 준하여 재산정합니다. 다만, 네트워크 지역지상파텔레비전방송 및 라디오방송의 시보 광고 시급변경에 따른 광고요금은 제2호의 토막광고의 시급변경에 따른 광고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제14조(시간변경, 불방) ①공사는 천재지변 등 방송사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이하 "불가항력"이라 합니다), 공공적 및 사회적 필요성 또는 방송사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이 변경됨에 따라 광고회사가 청약한 방송광고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제1항의 시간변경으로 인한 광고요금은 제13조를 준용합니다. 단 간접광고의 경우에는 당초 청약한

간접광고요금을 적용합니다.

- 제15조(개편) ①방송광고 청약기간 중 방송사로부터 방송프로그램 개편통지를 받은 때에는 공사는 광고 회사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다만, 공사의 코바넷에 개편 공지를 함으로써 통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5.2.21>
  - ②광고회사가 개편된 방송프로그램에 개편 전 청약한 방송광고시간대 또는 해당 프로그램으로 계속 방송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광고회사는 우선적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제16조(방송광고물의 접수, 심의와 전송) ①광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광고주가 방송광고를 하고자하는 방송광고물을 공사에 접수, 방송사의 방송가능 판정을 받아 방송되도록 합니다. <개정 2020.11.30.> <개정 2025.2.21>
  - 1. 광고회사는 방송광고 심의관리시스템(cmreview.kobaco.co.kr)에 접속하여 방송광고물을 등록합니다.
  - 2. 방송사(한국방송협회)는 방송광고 심의관리시스템(cmreview.kobaco.co.kr)에 접속하여 광고회사 가 등록한 방송광고물을 심의합니다.
  - 3. 광고회사는 공사의 코바넷에 접속하여 방송사(한국방송협회)가 심의 완료한 방송광고물을 등록합니다.
  - 4. 공사는 코바넷에 등록한 방송광고물에 한하여 코바넷에 등록과 디지털화한 후 방송국에 방송광고물을 전송합니다.
  - ②광고회사는 신규 광고주 대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방송광고물 접수 이전에 제9조의 대행 광고주와의 신규계약 체결과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계약이 체결된 광고주는 제외합니다.
- 제 17조(방송광고 청약과 청약의 승낙) ①광고회사가 방송광고를 청약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의 영업사원과 협의 후 협의된 내용에 따라 공사의 코바넷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광고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사의 영업사원은 코바넷에 광고회사가 청약하고자 하는 내용을 대신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0.11.30.> <개정 2025.2.21>
  - ②공사는 제1항의 청약을 코바넷을 통해 받을 시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의 문제점이 없는 경우 이를 숭낙하여 확정처리하고, 코바넷을 통해 방송사에게 업무연락을 합니다. <개정 2025.2.21>
  - ③제1항, 제2항의 방송광고 청약에 의한 방송광고 기간은 공사와 광고회사가 상호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 ④광고회사는 방송광고 청약시 제9조, 제11조에 따른 대행계약 광고주 명의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제18조(판매방식)** ①공사는 방송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판매방식을 운영합니다. <개정 2020.11.30.>
  - 1. 복수의 방송광고를 하나의 상품으로 구성하여 판매하는 패키지 판매방식(단, 제19조의 '방송광고 결합판매'는 제외합니다.)
  - 2. 판매기간에 따른 판매방식
    - 가. 업프런트(Upfront) 판매 : 3개월 이상 단위 판매

- 나. 정기물 판매 : 2개월 이하 단위 판매
- 다. 임시물 판매 : 단 건에서 1개월 이하 단위 판매
- 3. 공사가 사전 지정한 방송광고를 대상으로 보다 높은 광고요금을 제시하는 방송광고 청약자에게 판매하는 프리엠션(Preemption) 판매방식
- 4. 공사가 사전에 정한 방송프로그램광고순서 지정대가를 부담할 경우에 방송광고 청약자가 방송프로그램광고의 방송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프로그램광고순서 지정판매방식
- 5. 시청률 요인, 방송광고 시장의 변동 요인 등을 고려하여 방송광고 청약자에게 시청률, 청약횟수 등을 보장하거나 청약액을 확정하는 판매방식
- 총시청률(Gross rating points) 보장판매, ROS(Run of Schedule)판매, 월 청약액 확정 판매 등 ②공사는 방송사와 협의하여 방송광고 판매방식에 따라 광고요금의 할인 및 할증, 무상의 방송광고시간 추가제공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5.2.21>
- ③제1항에 따른 판매방식 및 그 변경이나 폐지, 제2항에 따른 광고요금의 할인 및 할증, 무상의 방송 광고시간 추가제공 등은 방송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하며 그 내용은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합니다)로 사전고지합니다. 다만, 협의된 내용을 광고1번지 등 판매정보지와 코바넷에 게재함으로써 사전고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0.11.30.> <개정 2025.2.21>
- 제19조(방송광고 결합판매) 공사는 방송광고판매법 제20조에 따라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합니다.
- 제20조(광고판매의 제한) 공사는 광고주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광고를 판매 할 수 없습니다.
- 제21조(방송광고 중지) ①광고회사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공사는 광고회사와의 방송광고 업무 거래 기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광고회사가 공사에 의뢰한 방송광고의 중지를 방송사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 1.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공사가 방송광고 업무대행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2. 7장에 따른 방송광고료납부 의무 또는 8장에 따른 지급보증 제출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
  - 3.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 5. 기타 관계법규에 저촉되어 방송광고에 적합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
  - ②광고회사는 방송광고 청약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방송광고 개시 전 코바넷을 통해 공사에 방송광고의 중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0.11.30.> <개정 2025.2.21>
- 제22조(운행불일치) ①방송광고 운행불일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 1. 공사 또는 방송사의 착오로 방송광고 청약자의 방송광고 일부 또는 전부가 방송되지 아니한 경우
  - 가. 편집착오: 구 광고소재 사용, 광고소재 착오, 방송광고 기간 착오
  - 나. 초수 짤림
  - 다. 비디오, 오디오 불량 등
  - 2. 방송광고 청약자가 청약하지 않은 방송광고가 방송된 경우 및 시간대 착오, 법적 허용량 초과

방송광고물 등

- 3. 방송광고 청약자의 귀책사유로 방송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방송된 경우 등
- ②제1항의 제1호, 제2호의 경우 해당분의 광고요금을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 ③제1항의 제3호의 경우 광고요금을 방송광고 청약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청약 및 편성 변경 등의 사유로 광고요금이 변동되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 청약자, 방송사, 공사가 협의하여 달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0.11.30.>

# 제4장의 1 간접광고에 관한 특례

- 제23조(간접광고의 특례) 간접광고 영업대행에 관한 업무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본 약관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되, 이 장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특례조항에 따릅니다.
- 제24조(용어의 정의) 간접광고 영업대행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다음의 용어는 각 호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릅니다. <개정 2016.8.25.>
  - 1. "노출"은 방송프로그램 내에서 상표, 로고 등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회사를 알 수 있는 표시를 화면에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 2. "노출횟수"는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시행된 노출의 횟수를 말하며, 이때 1회는 한 회 방송분당 한 장면(scene)에서 상표, 로고 등이 노출되었을 때로 정의합니다. 단, 청약사항에 따라 1초 노출 또는 방송프로그램 1회 방송을 노출 1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3. "간접광고 판매의뢰서"는 공사에 간접광고 판매를 의뢰하기 위하여 방송사(또는 외주제작사)가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를 노출하고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노출 가능한 간접광고 의 유형, 노출방식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말합니다.
  - 4. "간접광고 이행의뢰서"는 광고회사가 판매의뢰서를 토대로 노출품목, 노출방식 등 간접광고 노출에 관한 세부적인 이행사항을 기술한 서류를 말하며 방송사(또는 외주제작사)가 수락하면 광고회사와 공사 간 간접광고의 내용으로 확정됩니다.
- 제25조(예고방송, 재방송, 연장방송) ①간접광고로 청약된 방송프로그램이 예고방송된 경우, 그 예고방송에 대해서는 간접광고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 ②간접광고로 청약된 방송프로그램이 재방송된 경우, 그 재방송분에 대해서는 간접광고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 ③간접광고로 청약된 방송프로그램이 연장 방송된 경우, 연장방송분에 대한 간접광고료 등 간접광고 내용은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종전의 청약자가 연장방송분에 대해서도 계속 간접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제26조(간접광고물의 접수) <삭제 2020.11.30.>
- 제27조(간접광고 청약과 청약의 승낙) ①광고회사는 사전 고지된 제작일정에 맞춰 간접광고제작에 차질이 없도록 판매의뢰서를 토대로 공사의 영업사원과 협의 후 협의된 내용에 따라 이행의뢰서를 작성하여 코바넷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정 2025.2.21>

- ②공사는 제1항의 청약을 코바넷을 통해 받을 시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적인 문제점이 없는 경우 이를 승낙하여 확정처리하고, 코바넷을 통해 방송사(또는 외주제작사)에게 업무연락을 합니다. <개정 2016.8.25.> <개정 2025.2.21>
- ③광고회사는 간접광고 청약시 제9조, 제11조에 따른 대행계약 광고주 명의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제28조(간접광고계약 성립) 코바넷을 통해 발송된 청약서 및 이행의뢰서를 방송사(또는 외주제작사)가 이의 없이 접수하면 방송사(또는 외주제작사), 광고회사, 공사 간 간접광고계약이 성립되며, 이는 방송 광고거래 기본계약으로 대체됩니다. <개정 2016.8.25.> <개정 2025.2.21>
- 제29조(상호협력) ①광고회사가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및 간접광고 진행상황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합니다.
  - ②광고회사는 자신이 청약한 간접광고가 원활히 노출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 제작시 광고주의 상호, 상품 및 영업장 등의 사용 또는 이용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 제30조(조기종영) 간접광고로 청약된 방송프로그램이 불가항력이나 공공적, 사회적 필요성 및 방송사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조기 종영될 경우, 간접광고요금은 본 방송에서 실제 노출된 횟수에 한하여 청구됩니다.
- 제31조(권리귀속 등) ①공사와 광고회사가 간접광고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하거나 획득한 간접광고물, 노하우, 기술, 설계 등의 모든 권리의 귀속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마케팅 활동과 관련하여 광고회사가 간접광고물을 활용할 경우에, 광고회사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제5장 신탁마감

- 제32조(일정) ①신탁마감은 월 단위로 이루어지고, 신탁마감일은 신탁 발생 월의 익월 1일이며 그 신탁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이후 도래하는 첫 근무일을 신탁마감일로 합니다. <개정 2020.11.30.>
  - ②공사는 매월 신탁마감일정을 공사의 코바넷에 공지합니다. <개정 2025.2.21>
- 제33조(신탁마감 자료 제공) 공사는 코바넷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신탁마감 자료를 제공합니다. <개정 2025.2.21>
  - 1. 광고주 월별현황
  - 2. 광고주 매체별 신탁
  - 3. 광고주별 인정 신탁 / 수수료
  - 4. 광고회사 매체별 신탁/수수료
  - 5. 광고료 납부명세서
  - 6. 거래 명세표

- **제34조(신탁마감 관리)** ①광고회사는 청약한 방송광고의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청약한 내용과 다르게 방송광고가 집행될 경우, 즉시 공사에 이를 통보하고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공사와 협의를 합니다.
  - ②광고주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광고회사는 지체 없이 코바넷을 통하여 변경 사항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개정 2020.11.30.>

#### 제6장 세금계산서

- 제35조(월합계세금계산서) 제36조의 광고료 세금계산서 및 제37조의 광고회사 대행수수료 세금계산서 는 매월 말 기준으로 발행되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광고주나 광고회사가 폐업, 월 청약액 확정 상품 구매 등의 사유로 월말일자가 되기 전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달리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0.11.30.>
- 제36조(광고료 세금계산서 발행과 승인) ①공사는 광고회사가 방송광고대행계약에 따라 광고주를 대행한 광고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이하 "부가세법령"이라 합니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②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가 광고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광고회사는 부가세법령에 따른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기한 내에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③전자세금계산서상의 광고주는 광고회사의 이 약관에 따른 방송광고청약신청 시의 광고주 및 공사가 제59조에 따라 대행인정한 광고주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제37조(광고회사 대행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 광고회사는 공사가 광고회사에 지급하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부가세법령에 따라 기한 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공사에 발행하여야 합니다.
- 제38조(가산세 등) 제36조 제2항과 3항 및 제37조의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세법상의 일체의 가산세 등의 문제는 광고회사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39조(영세율 적용) ①외국광고주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규에 따릅니다.
  - ②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가 요청하는 소정의 서류를 방송광고 청약 이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7장 광고회사의 방송광고료 납부와 환불 <개정 2020.11.30.>

- 제40조(방송광고료 납부) 광고회사는 공사에 의뢰한 방송광고에 대한 매월 분 광고료를 본 약관 제7장 (지급보증감면 광고회사는 제9장)에 따라 "공사"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41조(방송광고료의 상계) 제40조의 광고료를 "공사"에게 납부하는 광고회사는 제57조에 따라 공사가

광고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대행수수료를 상계한 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원치 않는 광고 회사는 공사에게 광고료 전체를 납부함과 동시에 별도의 문서로 대행수수료 지급을 청구합니다.

- 제41조의2(광고료 환불) 광고회사 폐업이나 기타의 이유로 제41조 후문의 지급 청구가 없는 상태에서 상사시효(상법 제64조)가 도과한 경우, 공사는 해당 금액을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본조신설 2025.2.21]
- 제42조(방송광고료 납부기한) ①광고회사는 제40조에 의한 광고료를 방송광고를 한 당해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22일까지 평균 3개월 이내에 현금화될 수 있는 제43조의 수단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부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합니다. <개정 2020.11.30.>
  - ②제1항과 같이 외상거래 이후 광고료를 후불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8조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 지급보증 감면 대상 광고회사의 경우에는 제54조에 의한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43조(납부수단) 광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수단으로 광고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제52조의 지급 보증 감면 대상 광고회사의 경우에는 제55조에 의한 수단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1. 현금.
  - 2.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표지어음 등의 금융상품
  - 3. 광고주가 발행하거나 배서한 수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 단, 광고집행월 기준 광고회사를 통해 공사에 광고방송을 의뢰한 금액 이내로 합니다.
  - 4. 금융기관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광고회사의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을 사용한 전자결제
  - 5. 광고회사가 발행한 수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
- **제44조(지급보증 방법에 따른 광고료 납부방법)** 제48조 제1항 제1호와 제2항의 연대보증서 제출 광고회사는 광고료의 50% 이상을 제43조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단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45조(납부기한의 연장) 광고회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42조 제1항의 방송광고료 납부기한 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권보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사와의 협의한 후 사전승인을 받아 납부기한을 조정할 수 있으나 월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46조(영세율 광고료 등)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법규에 의한 영세율 광고주가 광고료를 공사에 송금을 한 경우 공사는 동 금액을 광고회사에 송금하며, 이 때 발생하는 환차 손익 등은 광고회사에 귀속됩니다.

#### 제8장 광고회사의 지급보증 제출

제47조(지급보증 제출) ①광고회사는 광고료 납부 등 본 약관의 이행에 대한 보증으로써 제48조 제1항의 각 호의 하나 이상을 공사에게 방송광고 청약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 2020.11.3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3조의 제1호 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수단으로 광고료를 방송광고 청약이전에 선입금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설 2020.11.30.>

**제48조(지급보증 방식)** ①광고회사는 다음의 지급보증 유형 중 하나 또는 병용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 2020.11.30.> <개정 2025.2.21>

- 1. 신용평가회사의 기업어음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 또는 회사채평가등급이 BBO 이상인 상장기업, 신용평가회사의 기업어음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 또는 회사채평가등급이 A- 이상인 비상장기업의 유한책임 연대보증서(단, 기업어음신용평가등급과 회사채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제정하는 계약예규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준용)
- 2. 정부에서 인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 3.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 4.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②제1항 제1호의 연대보증서의 경우 공사가 요구하는 소정의 연대보증서 등의 양식을 갖추어 방송광고 청약 이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연대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연대보증기업의 결산 시기에 따라 보증일로부터 당해연도말 또는 6월말로 하며, 연대보증금액의 인정한도는 연대보증기업의 전기 회계연도 결산서의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보증채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개정 2020.11.30.>

- 제49조(지급보증 금액) 광고회사의 지급보증 금액은 다음 제1항의 기본지급보증금액과 제2항의 추가지 급보증금액의 합계 금액 이상으로 합니다.
  - ①기본지급보증금액은 방송광고를 개시한 당월 거래금액과 당월 거래금액에 대한 제42조의 광고료 납부기한까지의 외상거래금액으로 합니다.
  - ②추가지급보증금액은 제43조(납부수단) 제2호 내지 제4호 중 부실 발생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금액과 5호의 광고회사가 발행한 수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을 광고료로 납부할 경우의 해당 금액과의 합계액 이상으로 합니다.
- 제50조(지급보증 금액 공제) ①광고회사가 제43조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단으로 광고료를 방송광고 청약 이전 또는 제42조의 방송광고료 납부 기한 이전에 선입금하거나 담보로 제출하는 경우 공사는 제49조의 지급보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②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0.11.30.>
    - 1. 제43조 제2호 부터 제4호 중 부실 발생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광고회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0호의 특수관계인인 광고주로 어느 일방의 부도시 연쇄 부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광고주가 발행하거나 배서한 수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
  - ③제1항에서 수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 등 납부수단의 지급기일은 방송광고 당해월말 기준으로 평균 3개월 이내에 현금화 가능하여야 합니다. <개정 2020.11.30.>
- 제51조(지급보증 교체·연장, 중액 및 감액) ①광고회사는 제48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급 보증서의 만기가 도래할 경우에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교체·연장하여야 합니다. <개정 2020.11.30.> <개정 2025.2.21>

- 1. 제48조 제1항 제1호의 연대보증서는 보증기간 만료일 1개월전에 교체
- 2.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지급보증서는 보증기간 만료일 3개월전에 교체
- 3. 제48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은 보증기간 만료일 1개월전에 교체 ②광고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와의 거래금액이 제49조 지급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액을 하여야 하며, 지급보증 금액이 감소할 경우에는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거래금액 변동에 따른 증액과 감액의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9장 지급보증의 감면

- 제52조(감면 요건) ①공사에서 지정한 신용평가기관 및 이에 준하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 감면신청 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에 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공사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득하면서, 공사가 정한 거래조건을 충족한 광고회사의 지급보증금액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공사는 동 세부기준을 코바넷에 게재합니다. <개정 2014.4.16.><개정 2020.11.30.> <개정 2025.2.21>
  - ②제1항에 따라 지급보증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광고회사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56조 제1항의 감면기간 시작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4.4.16.><개정 2020.11.30.>
    - 1. 지급보증감면 신청 공문
    - 2. 공사가 지정하는 신용평가기관 및 이에 준하는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한 기업신용평가등급서 및 부속명세서
  - ③제1항에 따라 지급보증감면을 받은 광고회사라도 공사가 정한 지급보증감면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사는 그 광고회사에 대한 지급보증감면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동 세부기준을 제52 조 제2항의 기한까지 제4조 제1항 제19호의 코바넷에 게재합니다. <신설 2014.4.16>
- 제53조(감면 금액) ①감면 금액은 본 조 제2항의 산식과 같이 제52조 제2항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의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보증채무를 차감한 금액에서 공사가 정한 감면요소에 의해 산출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②지급보증 감면금액 = (직전 회계연도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 보증채무) x 감면비율
  -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면 금액이 제49조 제1항의 기본지급보증금액보다 적을 경우, 동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47조에 따라 제48조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④공사는 광고회사의 재무상태, 신용상황 등 변동요인을 반영하여 제56조의 감면기간 중이라도 지급 보증 감면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제54조(지급보증 감면 광고회사의 방송광고료 납부기한) ①제52조에 해당되는 지급보증 감면 광고회사의 광고료 납부기한은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방송광고를 한 당해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부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합니다. <개정 2020.11.30.>
  - ②광고회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방송광고료 납부기일 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권보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사와의 협의한 후 사전승인을 받아 납부 기한을 조정할 수 있으나 월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55조(지급보증 감면 광고회사의 방송광고료 납부수단) ①제52조의 지급보증감면에 해당하는 광고회사는 제43조 제1항의 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단으로 광고료를 납부하여 합니다.
  - ②제43조 제5호나 제43조 2호 내지 4호 중 부실채권 발생우려가 있는 수단으로 광고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7조에 따라 제4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56조(감면기간) ①지급보증 감면기간은 지급보증감면 요청 연도의 6월 1일부터 익년도 5월 31일까지입니다.
  - ②제1항의 지급보증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광고회사는 제52조 제2항의 기한까지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장된 경우에 지급보증감면금액은 제53조에 따라 재산정합니다.

## 제10장 방송광고 대행수수료

- 제57조(대행수수료 지급) ①공사는 방송광고판매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범위 내에서 해당 광고를 의뢰한 광고회사에게 대행수수료를 지급합니다. <개정 2025.2.21>
  - ②공사는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를 위탁판매 할 때 관계법령에서 지정한 범위에서 해당 광고를 의뢰한 광고회사에게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신설 2016.8.25.>
  - ③제1항 및 2항과 관련한 세부 지급률은 "방송광고 거래 기본계약"에서 정합니다. <개정 2016.8.25.>
- 제58조(대행수수료 지급 기준) 제57조의 대행수수료 지급은 제59조의 대행 인정에 의합니다.
- 제59조(대행인정 등) ①광고회사가 제9조 내지 제11조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광고주와 광고회사 간 방송광고대행계약의 인정을 요청하는 경우, 공사는 대행 인정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이 경과한 날부터 대행을 인정합니다. 다만, 공사와 직접 방송광고거래 중인 광고주가 광고회사와 방송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대행 인정을 요청한 날부터 대행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0.11.30.>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대행을 중지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광고회사와 방송광고대행계약 중인 광고주가 공사에 별도 문서로 직접 방송광고청약을 한 경우
    - 2. 광고회사가 방송광고대행 광고주를 공사와 방송광고 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한 타 광고회사에 재 대행계약하여 대행을 위임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 3. 광고회사와 방송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광고주가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경우
    - 4. 제3장의 대행계약확인서, 대행해지확인서 및 대행연장확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11장 기타사항

- 제60조(기한이익 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광고회사에게 발생하는 경우에, 공사에 대한 광고회사의 이 약관상 모든 채무는 이행 기한 만료전이라도 즉시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1.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2. 파산 또는 회생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 3.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제61조(손해배상 등) ①귀책사유로 이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행불일치와 관련한 광고료청구에 대해서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고회사가 공사에게 광고료를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 및 미지급 발생 당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에 게시되어 있는 예금은행 가중 평균 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기업일반자금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개정 2020.11.30.> <개정 2025.2.21>
  - ③공사의 귀책사유 없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 기 체결된 방송광고 청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방송되지 않거나 지체 또는 불완전하게 방송된 경우에, 공사는 이로 인하여 광고회사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개정 2025.2.21>
  - ④간접광고의 노출이 방송법, 방송광고심의 기타 방송과 관련된 제반규정에 저촉되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광고회사는 공사와 방송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제62조(비밀유지) ①공사와 광고회사는 이 약관의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알 게 된 상대방의 정보(양자를 통칭하여 이하 "비밀정보"라 합니다)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약관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방송광고제작 및 모니터링과 관련된 자(이하 "방송광고 관련자"라 합니다)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 ②공사나 광고회사가 방송광고 관련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비밀유지의 무를 방송광고 관련자에게 부과하여야 합니다.
  - ③공사나 광고회사가 비밀정보를 이 약관상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상대방으로 부터 제공한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폐기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 여야 합니다.
- 제63조(약관의 이행 등) ①공사와 광고회사는 이 약관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 방송광고판매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을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이 약관상의 의 무를 이행합니다.
  - ②공사와 광고회사는 상대방이 이 약관상의 의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위반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자신의 이 약관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③공사와 광고회사는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사전서면 동의 없이 이 약관상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담보제공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 ④이 약관의 어느 조항이 무효 또는 집행불능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고 집행가능합 니다.

- 제64조(약관 외 규정의 적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이나 방송광고 판매법 및 동법 시행령과 고시 등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와 광고회사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습이나 상법에 따릅니다.
- 제65조(분쟁해결) 이 약관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와 광고회사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울중앙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4.4.16.>

이 약관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6.8.25.>

이 약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6.12.23.>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0.11.30.>

이 약관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5.2.21.>

이 약관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방송광고 거래 신청서

1. 법인명			2. 빝	2. 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4. 人	4. 사업자등록번호				
5. 주사무소 주소 및 연락처		(우편번호) (	-	)				
		홈페이지			Tel		Fax	
6. 지 사 주소 및 연락처								
7.업무담당자		성명(직위)			연락처		Email	
7. H I D 0/1								
7.818071								
7. 日 1 日 0 7 1								
7.818021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법인인감

첨부서류 : 1.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귀 중

(양식 1) (양식 2)

#### 방송광고 대행계약 확인서

와 광고회사 방송광고대행계약이 아래와 같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1. 대행계약기간 : 년 월 일 -년
- 2. 대 행 품 목:

녆 월 일

광고주:주 소 상 호

(9) (TEL:

대표자 광고회사 : 주 소 상 호

(인) (TEL:

)

대표자 덧붙임: 광고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귀중

- ※ 대행계약기간 연장시에는 연장개시일 1일전까지 연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광고주 상호는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해야 합니다.
- 매월 방송광고 종료 후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급받는 자는 광고주입니다. (광고회사는 비고란에 수탁자로 표기)
- 이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광고주와 광고회사 상호 간에 해결하여야 합니다.

### 간접광고 대행계약 확인서

와 광고회사 간에

- 1. 대행계약기간 : 년 월 일 -년
- 2. 대 행 품 목:
- 3. 매체및프로그램:

녆 월 일

(인) (TEL:

)

광고주:주 소 상 호 대표자

광고회사 :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TEL: 덧붙임: 광고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귀중

- ※ 대행계약기간 연장시에는 연장개시일 1일전까지 연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광고주 상호는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해야 합니다.
- 매월 방송광고 종료 후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급받는 자는 광고주입니다. (광고회사는 비고란에 수탁자로 표기)
- 이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광고주와 광고회사 상호 간에 해결하여야 합니다.

(양식 3) (양식 4)

# 방송광고 대행연장 확인서

광고주 와 광고회사 간에 방송광고대행계약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확인합니다.

1. 대행계약 연장기간 : 년 원 일 월 일 녆 일 월 일 년 원 녆

2. 대 행 품 목:

년 월 일

광고주:주소 상 호

> 대표자 (인) (TEL:

광고회사:주 소 상 호

(인) (TEL:

대표자 덧붙임: 광고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귀중

- 광고주 상호는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해야 합니다.
- 매월 방송광고 종료 후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급받는 자는 광고주입니다. (광고회사는 비고란에 수탁자로 표기)
- 이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광고주와 광고회사 상호 간 에 해결하여야 합니다.

# 가접광고 대행연장 확인서

와 광고회사 간에 간접광고대행계약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1. 대행계약연장기간 : 년 월 일 -년 일 월 년 일 년 월 일
- 2. 대행 품 목:
- 3. 매체및프로그램:

년 월 일

광고주:주소 상 호

대표자

광고회사: 주 소

상 호

대표자 덧붙임: 광고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인) (TEL:

(인) (TEL:

#### 한국방송광고진홍공사 귀중

- 광고주 상호는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해야 합니다.
- 매월 방송광고 종료 후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급받는 자는 광고주입니다. (광고회사는 비고란에 수탁자로 표기)
- 이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광고주와 광고회사 상호 간에 해결하여야 합니다.

(양식 5) (양식 6)

## 방송광고 대행해지 확인서

광고주 와 광고회사 간에 방송광고대행계약이 아래와 같이 해지되었음을 확인합니다. 1. 해 지 일 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2. 대 행 품 목 :

변월일 광고주:주소 상호 대표자 (인)(TEL: ) 광고회사:주소 상호 대표자 (인)(TEL: )

덧붙임 : 광고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귀중

- 광고주 상호는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해야 합니다.
- 매월 방송광고 종료 후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한국방송광고진홍공사, 공급받는 자는 광고주입니다. (광고회사는 비고란에 수탁자로 표기)
- 이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광고주와 광고회사 상호 간에 해결하여야 합니다.

### 간접광고 대행해지 확인서

<u>광고</u>주 와 광고회사 간에 1. 해 지 일 자 : 년 월 일부터 2. 대 행 품 목 : 3. 매체및프로그램 : 년 월 일 광고주:주소 상 호 대표자 (인) (TEL: ) 광고회사 :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TEL: )

덧붙임 : 광고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귀중

- 광고주 상호는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해야 합니다.
- 매월 방송광고 종료 후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한국방송광고진홍공사, 공급받는 자는 광고주입니다. (광고회사는 비고란에 수탁자로 표기)
- 이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광고주와 광고회사 상호 간에 해결하여야 합니다.